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3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권한과책임의 합리적인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사회과소관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
- 지역경제과소관의 상품권 발행등록및 취소
- 치수과소관의 하천감시원의 임명과 법령등의 위반자에대한 시정명령

□ 근거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 제 5 항 ----- 따로붙임
- 상품권법 제 7 조 ----- 따로붙임
- 하천법 제 71 조 제 1 항 ----- 따로붙임
-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3조 ----- 따로붙임

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(별표 1) 중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기반조성과를 농지개량과로 농산물유통과를 원예유통과로 도시계획과를 지역계획과로 한다.

(별표 1) 중 회계과소관 제 2 호 다음에 제 3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회 계 과	3	◦ 도유폐천부지관리및 매각	지방재정법 제 73 조

(별표 1) 중 사회과소관 제 1호 내지 제 25 호를 제 1 호내지 제 21 호로 하고 제 22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사 회 과	22	◦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	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 제 5 항

(별표 1) 중 보건과소관 제 72 호 다음에 제 73 호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보 건 과	73	◦ 병원개설 허가	의료법 제30조 제 4 항